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89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의자 : 김태선 · 김주영 · 윤후덕

허성무 · 박정 · 장철민

곽상언 · 이학영 · 박홍배

박민규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약의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호에서 제외되거나, 노무제공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통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의 형태나 노무의 방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 노동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무제공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발생 시 조정을 신청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제1항제8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

제3조제1항제2호 중 “조정(調整)사건”을 “조정(調整)사건 및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정”을 “조정 또는 분쟁조정”으로 한다.

제6조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분쟁조정 담당 공익위원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정담당 공익위원 및 분쟁조정 담당 공익위원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정담당 공익위원 및 분쟁조정 담당 공익위원

제15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분쟁조정 위원회

⑩ 제1항제8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 분쟁 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 1. · 2. (현행과 같음) <u>3.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u>
<u>3. · 4. (생 략)</u>	<u>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u>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1. (생 략) 2.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사건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① -----. 1. (현행과 같음) 2. ----- <u>조정(調整)사건 및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u>
3.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u>조정</u>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조정 또는 분쟁 조정</u> -----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⑥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4.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분쟁조정 담당 공익위원</u>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조정담당 공익위원</u>	2. <u>조정담당 공익위원 및 분쟁조정 담당 공익위원</u>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② ----- ----- ----- -----

<p>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조정담당 공익위원</u></p> <p>가. ~ 마. (생략)</p> <p>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7. (생략)</p> <p><u><신설></u></p> <p>② ~ ⑨ (생략)</p> <p><u><신설></u></p>	<p>----- -----.</p> <p>1. (현행과 같음)</p> <p>2. <u>조정담당 공익위원 및 분쟁조정 담당 공익위원</u></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 ----- -----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u>8.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u></p> <p>② ~ ⑨ (현행과 같음)</p> <p><u>⑩ 제1항제8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 분쟁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u></p>
---	---

한다.